

제172회(임시회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

제1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4면
2.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	12면
3.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	17면
○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	21면

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시(안 제4조제1호)
개별법에 지원 규정이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(종로구새마을회, 바르게살기운동종로구협의회), 안보관련단체(한국자유총연맹),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- 나.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계획과장으로 변경(안 제10조제3항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, 「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」,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(2)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민운동지원단체(종로구새마을회, 바르게살기운동종로구협의회), 안보관련단체(한국자유총연맹종로구지부),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
제10조제3항제1호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주민생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중 “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, “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----- ----- ----- -----
제4조(지원대상) (본문생략)	제4조(지원대상) (현행과 같음)
1. <u>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</u>	1. <u>국민운동지원단체(종로구새마을회, 바르게살기운동종로구협의회), 안보관련단체(한국자유총연맹종로구지부),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 구성)	제10조(위원회 구성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1. 당연직 위원 : 자치행정과장, 기획예산과장, <u>주민생활지원국장</u>	1. ----- ----- <u>주민생활계획과장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~ ⑤ (생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